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4. 15 .

발 의 자 : 김수민·박주현·채이배·김종
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손혜원 의원

제안이유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2

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임신 14주일 이내의 임신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임신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4조)

라.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인심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①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를 인공임신중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 ① 의사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

② 의사는 임신 14주를 초과하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산부 본인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

1. 태아가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4.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은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임산부 본인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임산부는 위 1항과 2항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6조의2를 제26조의4로 한다.

제26조의2(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26조의3(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2(과태료)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인공임신중절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의3(과태료)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인공임신중절하게 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의4(과태료)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 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p> <p>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 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p> <p>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 는 경우</p>	<p>제13조(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 한) ①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 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 다.</p> <p>② 누구든지 제14조제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임산부를 인공임신중절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 ① 의사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 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p> <p>② 의사는 임신 14주를 초과하 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 아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p> <p>1. 태아가 출생 전의 해로운 영 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p>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4.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은 임신 22주 이내인 임신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임신부 본인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

<신설>

양외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임산부는 위 1항과 2항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신설>

제26조의3(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

< 신설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를 부과한다.

제27조의4(과태료)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7조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 제>